

하와이주 교육부 학교 급식부
(Hawaii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School Food Services Branch)

특수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학교 영양 프로그램의 편의 제공(첨부 J)

장애 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교육 및 교육 관련 혜택을 받을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연방 학교 영양 프로그램은 이러한 학생을 위한 특수 급식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편의 제공의 예시로는 식품 제한 및 대체, 질감 및 농도의 변화(예: 튀레, 진한 액체), 칼로리의 증가 또는 감소, 탄수화물 양이 포함됩니다.

본 문서는 연방법 및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요건을 토대로 한 학교 영양 프로그램의 특수 급식 편의 제공에 대한 지침을 포함합니다. 또한 본문은 이러한 편의 제공에 적용되는 식사 조정 요건 및 추가 정책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섹션 I. 장애에 적용되는 연방 법령

연방 법령은 학교 급식이 장애 아동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법령으로는 **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IDEA)**, **1990년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 of 1990)** 및 **2008년 미국 장애인법 개정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Amendments Act)(ADAAA)**이 있습니다. 또한 USDA는 차별 금지 규정(7CFR 15b) 및 연방학교 점심 프로그램과 학교 조식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and School Breakfast Program)에 적용되는 규정을 공표했습니다. 이 규정들은 공인 의료 기관이 대체식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장애로 인해 식사를 제한해야 하는 아동을 위해 일반 식사를 대체할 식사를 제공할 것을 명시합니다.

학교에 대한 지침은 USDA 음식 영양 서비스 지침(Food and Nutrition Service Instruction) 783-2, Revision 2, 의료 또는 기타 식이요법 사유로 인한 대체식(Meal Substitutions for Medical or Other Dietary Reasons)을 토대로 합니다. 대체식에 대한 USDA의 기본 지침은 현행 특수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학교 영양 프로그램의 편의 제공(Accommodating Children with Special Dietary Needs in School Nutrition Programs)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섹션 II. 장애 및 공인 의료 기관의 정의

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 섹션 504 및 1990년 장애미국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 따라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한 가지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이 크게 제한된 사람, 그러한 장애 기록을 가진 사람, 또는 그러한 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Physical or mental impairment)”는 (1) 신경계, 근골격계, 특수 감각 기관, 발음 기관을 포함한 호흡기, 생식기, 소화기, 비뇨생식기, 혈액 및 림프계, 피부 및 내분비계 중 한 가지 이상의 신체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장애 또는 질병, 외모의 손상, 해부학적 손실을 뜻합니다. 또는 (2) 정신 지체, 기질성 뇌증후군, 정서적 질병이나 정신 질환, 특정 학습 장애와 같은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장애를 뜻합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는 다음을 포함한 여러 질병과 질환을 포함합니다.

- 정형외과, 안과, 언어 및 청각 장애,
- 뇌성마비,
- 간질,
- 근육위축병,
- 다발성 경화증,
- 암,
- 심장병,
- 당뇨나 페닐케톤뇨증(PKU)과 같은 대사질환,
- 식품과민증(심각한 식품 알레르기),
- 정신지체,
- 정서적 질환
- 약물 중독 및 알코올 중독,
- 특정 학습 장애,
- HIV 질병 및
- 폐결핵.

“그러한 장애 기록을 가짐”은 한 가지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병력이 있거나 그러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것으로 잘못 분류된 것을 뜻합니다.

“그러한 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됨”은 (1) 주요 생활 활동이 크게 제한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제한을 가진 대상으로 치료를 받음, (2) 장애에 대한 타인의 태도로 인해서만 주요 생활 활동의 제약을 받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음, 또는 (3) 위에 정의된 장애를 갖고 있지 않으나 그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치료를 받음.

장애인 교육법

2004년 장애인 교육법(Under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따라 "장애"가 있는 아동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IDEA에 따라 한 가지 이상의 장애가 인정된 아동, 2)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애를 가진 아동, 3) 장애와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이러한 장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자폐증,
- 농맹,
- 난청 또는 기타 청각 장애,
- 정신지체,
- 정형외과 장애,
- 천식, 당뇨, 신장염, 겸상 적혈구성 빈혈, 심장 질환, 간질, 류마티스성 열, 혈우병, 백혈병, 납 중독, 결핵 등 기타 만성 질환이나 급성 질환으로 인한 건강 장애
- 정서적 장애,
- 특정 학습 장애,
- 발음 또는 언어 장애,
- 외상성 뇌손상,
-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명 등의 시각 장애,
- 다중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활동 장애는 13 가지 범주 중 하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류는 장애에 관련된 특성 및 학생에게 발현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통해 범주를 결정합니다.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은 IDEA 및 적용 규정에 따른 개발, 검토, 개정이 필요한 장애 아동에 대한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IEP는 IDEA가 적용되는 장애 아동에게 제공할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며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초석이 됩니다.

아동의 IEP에 따라 영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학교 담당관은 학교 급식 서비스 직원이 조기에 특수 급식 결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시적 장애

학생에게 일시적 장애가 있는 경우,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첨부 J-1에서 공인 의료 기관이 지정한 급식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시적 장애의 예시로는 구강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의 질감을 바꾸지 않는 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학생을 들 수 있습니다.

공인 의료 기관

연방 및 주 수준의 지침에 따라, 다음 정의를 통해 아동 영양 프로그램(Child Nutrition Program)의 급식 편의 제공을 위해 주에서 규정한 의료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합니다.

주 면허를 취득한 의사(예: MD, DO, ND), 의사 보조사(Physician Assistant, PA), 실무 및 전공 범위 내에서 처방 권한을 가진 전문 간호사(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 APRN/RPN), 하와이(주) 상업 및 소비자부(Department of Commerce and Consumer Affairs, DCCA)에서 승인한 의약품 처방 및/또는 의학적 영양 치료 면허를 소지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

섹션 III. 특수 급식 필요에 따른 급식 변경

USDA는 장애로 인해 식사가 제한된 학생을 위해 학교가 주에서 요구하는 공인 의료 기관이 제공한 의료 진술서 또는 첨부 J-1을 토대로 무료로 변경된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의료 진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아동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 아동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 빼야 할 식품과 대체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식품.

학교 급식부(School Food Services Branch, SFSB)가 특수급식 편의를 제공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의료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변경된 급식이 의학적으로 해당 아동에게 적합한 영양을 보상하고 표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섹션 IV. 추가 특수 영양 편의 제공 정책

가족이 제공한 식품 및 식사

SFSB는 학교 영양 프로그램을 위해 저장 및 준비한 모든 음식을 SFSB 및 승인된 출처에서 구매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부의 경우 학교는 학생의 가족이 구입하여 보낸 음식을 학교 주방에서 보관 및/또는 가열하고 제공하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제공한 음식은 학교 급식 담당자가 가열하여 제공하거나 보관했다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식사 보상 및 비용

자격을 가진 아동에게 제공하는 식사의 보상은 **USDA** 식사 패턴을 충족하는 식사와 같은 보상율로 청구합니다. 식사 변경을 필요로 하는 특수 급식 아동에게 다른 아동보다 비싼 식비를 청구해서는 안됩니다. 아동이 무료 또는 할인된 식사 제공 자격을 가진 경우, 변경된 식사에 대한 요금 역시 그와 같습니다.

의학적 특수 급식 필요 양식(첨부 J-1) 개정

학생의 식사 주문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은 공인 의료 기관이 서명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식사에 대한 요구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파일 상의 식사 정보 역시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참고: 공인 의료 기관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어떠한 경우에도 식사 처방이나 의학적 주문을 개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전학

학생이 학년 중에 전학을 가고 첨부 J-1에 대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전학을 간 학교는 **SFSB**에 직접 전학을 통지하여 기록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학을 간 학교의 학생식당 직원 교육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학생이 전학을 간 후 바로 특수 식사 편의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첨부 J-1 발급

한 학년도에 학생에 대해 복수의 특수 식사 요청이 제출된 경우, 해당 식사는 **최근** 첨부 J-1 양식에 제공된 정보만을 토대로 해야 합니다.

이전 양식은 무효화됩니다.

섹션 V. 첨부 J-1 양식 작성 지침

부모/보호자 및 학교: 특수 급식 필요 양식(첨부 J-1)은 학교가 필요한 학생에게 급식을 변경하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모든 항목을 완료하면 아동의 교육구가 학교에서 아동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양식에 모든 정보를 작성하지 않으면 학교 직원은 음식의 질감을 변경하거나 대체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처방 양식에 작성한 노트, 서신 및/또는 의견은 첨부 J-1을 대신하여 접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보호자의 서면 또는 구두 전달 내용을 토대로 특수 급식 편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시작하십시오.

1. 부모/보호자가 **3** 페이지 상단 학생 이름을 포함하여 **PART I**의 모든 항목을 작성합니다.
2. 작성 후 부모/보호자는 첨부 J-1을 아동의 공인 의료 기관에 제공하여 **PART II**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3. 부모/보호자는 작성된 첨부 J-1을 학교에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는 양식 원본을 받습니다.
4. 학교는 **SFSB**에 양식 사본을 제공하여 검토하도록 합니다.

공인 의료 기관: 이 양식은 학교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급식 변경을 제공하도록 돕습니다. 모든 항목을 작성하면 학생을 효율적으로 돌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가 올바르게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학교는 음식의 질감을 변경하거나 학생의 급식을 대체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급식 변경은 의학적 평가 및 치료 계획을 바탕으로 하며 공인 의료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첨부 J(섹션 I, II, III) 및 작성된 첨부 J-1을 확인해주시요.

귀하께서 첨부 J-1의 **PART II**를 작성하시면 의료 기관에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1. **PART II**의 모든 항목이 작성됨. "신규" 또는 "변경" 급식 주문인지 여부를 명시함(양식 상단 참조),
2. 아동의 식사를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의 성격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함,
3. 귀하의 아동 평가 결과 식사 대체, 농도 변경, 기타 식사 제한을 위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 아동/가족을 적절한 영양 제공 또는 알레르기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첨부 J-1을 작성합니다,
4. 이전 및/또는 기존 영양 제공/영양 평가나 관리 계획, 기타 관련 문서를 이용할 경우, 첨부 J-1을 참조합니다,
5. 아동의 학교 팀과 상담하여 학교에서 영양 제공/영양 관리 계획을 이행하도록 합니다.

섹션 VI. 절차적 보호 조치

시민권 질문이나 우려사항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hawaiipublicschools.org/ConnectWithUs/Organization/OfficesAndBranches/Pages/RCO.aspx>

참조:

학교 영양 프로그램의 특수 급식 필요 아동을 위한 편의 제공: 학교 급식 직원을 위한 지침.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01년 가을 개정

장애인을 위한 학교 급식 프로그램 편의 제공: 지침 및 질문과 답변(Q&A) SP 26-2017 2017년 4월 25일.

1990년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ADA) 2008년 ADA 개정법(ADA Amendments Act of 2008)(공법(Public Law) 110-325). <http://www.ada.gov/pubs/ada.htm>

미국 장애인법 개정법 관련 지침(Guidance Related to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mendments Act, ADA). SP 36-2013, CACFP 10-2013, SFSP 12-2013. 2013년 4월 26일.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http://idea.ed.gov/>

장애인을 위한 학교 급식 프로그램 편의 제공 개정. SP 59-2016. 2016년 9월 27일.

장애 아동을 위한 아동 영양 프로그램의 편의제공을 지원하는 설명문. SP 32-2015, SFSP 15-2015, CACFP 13-2015. 2015년 3월 30일 월요일.

주 기관의 공인 의료 기관 정의. 하와이 아동 영양 프로그램부(Office of Hawaii Child Nutrition Programs) 표준 운영 절차. 2015년 9월.

장애 학생 보호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cr/504faq.html>

연방 인권법 및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인권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본 기관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적, 성별(성 정체성 및 성 지향성 포함), 장애, 연령에 따른 차별이 금지되며 이전 인권 활동에 대한 보복이 금지됩니다.

프로그램 정보는 영어 외 다른 언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정보를 얻기 위한 대체 소통 수단(예: 브레이유 점자, 대형 활자, 오디오테이프, 미국 수어)이 필요한 장애인은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담당 주 또는 지역 기관이나 USDA의 TARGET Center,(202) 720-2600(음성 및 TTY)으로 연락하거나 연방 교환 서비스(800) 877-8339를 통해 USDA에 문의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차별 불만을 제기하려면 온라인에서 다음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양식 AD-3027, USDA 프로그램 차별 불만 제기 양식(USDA Program Discrimination Complaint Form)을 작성해야 합니다. <https://www.usda.gov/sites/default/files/documents/USDA-OASCR%20P-Complaint-Form0508-0002-508-11-28-17Fax2Mail.pdf>, 또는(866) 632-9992로 전화를 하거나 USDA에 서신을 보내 문의해야 합니다. 이 서신에는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인권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for Civil Rights, ASCR)에게 인권 위반 혐의의 성격과 날짜를 알릴 수 있도록 차별 행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작성된 AD-3027 양식이나 서신은 다음을 통해 USDA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우편: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Civil Rights
14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50-9410; 또는

2. 팩스:

(833) 256-1665 또는(202) 690-7442, 또는

3. 이메일:

program.intake@usda.gov